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준수사항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내용을 숙지 후 실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관련 규정/ 지침 숙지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고시 제2015-85호, 2016.1.6. 제정]

Ⅴ. 현장실습 운영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제3조 관련) 제2호

II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습자 모집

1. 모집 자격요건

- *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회복지사 과목 수강 기준 학습자 : 120시간 이상
- * 2020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사회복지사 과목 수강 기준 학습자 : 160시간 이상

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회복지사 과목 수강 기준 학습자

- 1) 선수과목 6개 과목 이상 이수자 (종강 기준 2024.06.20.까지)

영역	과목명	선수과목
필수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4개 이상
선택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개 이상

나. 2020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사회복지사 과목 수강 기준 학습자

- 1) 선수과목 6개 과목 이상 이수자 (종강 기준 2024.06.20.까지)

영역	과목명	선수과목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4개 이상
선택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개 이상

* 단, 본 실습과목은 2024학년도 2학기에 해당되므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II. 학사 운영 2. 학습과정의 등록 등’ 참고(하단 박스)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6개월당(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없음

2. 학습비 납부

구분	내용
접수장소	제2창학관 601호 (평생교육원 행정실)
공통사항 (세부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착순 방문, 매일접수 * 접수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오후 12시~ 1시까지) 제외]

III 실습기간 선정 및 출석수업 안내

1. 실습기간 선정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실습 시간	2019년 이수 기준 : 120시간 이상 2020년 이수 기준 : 160시간 이상		* 출석수업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실습 기간	1반	2024.09.07.(토)~12.05(목)까지 완료	* 토요일 수업은 수업 종료 2시간 후부터 실습 가능
선정 기준	실습 기관	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 ② 천안, 아산 지역만 가능 *[필수사항] - ‘불임4.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현황’ 목록에 있는 기관만 실습 가능. - 사회복지시험회(http://lic.welfare.net) 사이트에서 기관 현황 목록 업데이트 예정	* 근무지에서의 실습 불가함
	실습 지도교사	사회복지사 1급(경력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경력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고 기관에 상근하는 자 *지도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하지 않는 경우 상근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 실습기관별 실습 가능인원 : 실습지도자 1명 당 실습생 최대 5명,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습 지도교사는 중간에 변경 불가함

2. 실습 개강일 준비사항

구분	내용		비고
개강일	1반(금요반)	2반(토요반)	※ 제출서류는 해당기관에 의뢰 공문과 함께 발송 예정
	2024. 09. 06.(금)	2024. 09. 07.(토)	
제출서류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확인서 1부 * 실습기관에 요청하여 발급 후 제출		

3. 출석 수업

- 가. 출석수업 : 매주 출석 (15회 반드시 참석 이수)
- 나. 수업운영: 이론 강의 및 발표

IV 문의

☎ 041-570-7756 FAX 041)570-7723

2024. 07. 31.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